

Samil Commentary

Korean Tax Update

May 30, 2017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여부
확인제도 시행

한국·중국 간 원산지
심사절차 간소화

국세청 내 국제거래
전담 인력 크게 증가

최신 세무예규판례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여부 확인제도 시행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년 4월 현재 약 1,800억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 동안 시범운영 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함.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하여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음.

새로운 제도에 따라 우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 납부 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함.



한국-중국 간 원산지 심사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라고 함)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라고 함) 시범운영을 마치고 5월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FTA 세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출입업자가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제출하고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CO-PASS는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 간 원산지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말함. 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임. 2016년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임. 즉,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 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
- 원산지 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 2016년 대 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은 80건이었으며, 이중 44건이 CO와 관련된 통관애로였으나 CO-PASS 전면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해외통관애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CO-PASS 적용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국세청 내 국제거래 전담 인력 크게 증가

2017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현재 6개 지방국세청 포함한 국세청의 국제조세 관련 인력은 342명으로 2010년 187명에 비해 15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본 보고서에 따른 국제거래 전담 주요 인력은 다음과 같음.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8명)과 국제조세협력과(6명) 모두 14명의 인력이 국제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세청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 국제협력담당관실(16 명)- 아시아 국가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과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 명)- 외국법인 세적 관리와 외국자본 국내투자 세원관리업무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27 명)-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분석과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업무
- 상호합의팀(11 명)-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과 다자간 국제회의 업무
- 국세청 본청 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29 명)는 외국법인 조사관리와 국제거래(이전가격) 조사업무를 담당.
- 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 전담 조직 및 인력은 모두 239 명으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170 명), 중부청 국제거래조사국(40 명) 등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외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조사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 년 5,270 억원(192 개 외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 조사), 2012 년 4,906 억원(158 개 법인), 2013 년 8,535 억원(182 개 법인), 2014 년 5,558 억원(204 개 법인), 2015 년 6,130 억원(146 개 법인)을 추정해 조사실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있음.

최신 세무예규판례

허용되는 재조사 사유로서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대법 2014 두 6562, 2017. 4. 27.).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소득의 산정방법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음(대법 2016 두 64043, 2017. 4. 13.).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함(대법 2016 두 59713, 2017. 4. 13.).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가 주식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여부는 주식 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대법 2011 두 21447, 2017. 4. 20.).

적격인적분할로 외국인투자예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이전한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예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적격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여 분할존속법인은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 3. 6.).

<p>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p>	<p>내국세 주정일 709-0722 jjoo@samil.com</p>	<p>노영석 709-0877 ysnoh@samil.com</p>	<p>금융세무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p>
<p>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p>	<p>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p>	<p>정선홍 709-0937 shejung@samil.com</p>	<p>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p>
<p>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p>	<p>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p>	<p>조성욱 709-8184 sungwcho@samil.com</p>	<p>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pyun@samil.com</p>
<p>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p>	<p>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p>	<p>이전가격 & 국재통상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p>	<p>중소기업·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kyoonkim@samil.com</p>
<p>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p>	<p>황철진 709-0759 hcj@samil.com</p>	<p>헨리 안 3781-2594 henryan@samil.com</p>	<p>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p>
<p>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p>	<p>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p>	<p>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p>	<p>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p>
<p>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p>	<p>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p>	<p>조정환 709-8895 jhwanch@samil.com</p>	
<p>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p>	<p>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p>	<p>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p>	
<p>오남교 709-4754 ngoh@samil.com</p>	<p>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p>	<p>상속증여&주식변동 이현중 709-6459 hyunjonglee@samil.com</p>	
<p>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p>	<p>남동진 709-0656 djnam@samil.com</p>		
<p>김영욱 709-7902 yokim3@samil.com</p>	<p>나승도 709-4068 sdna@samil.com</p>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